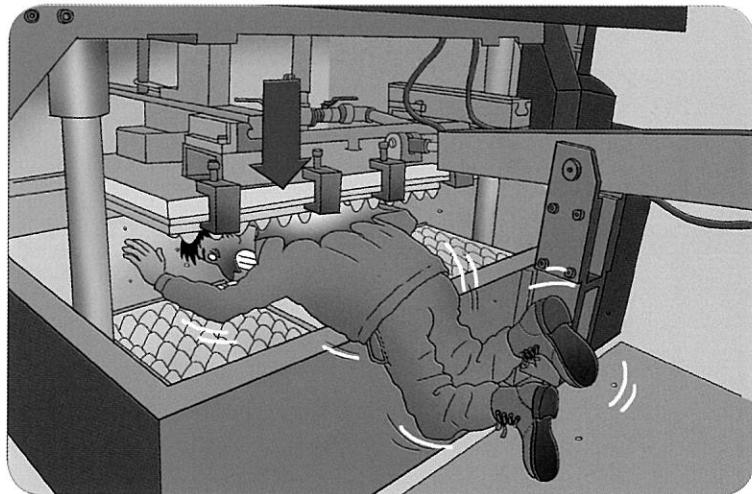


펄프 성형기에 협착

재해개요

외국인 근로자인 피재자는 계란운반상자 제작용 건식 펄프성형기에서 작업 중 불량품이 아래쪽 금형에 달라붙자 기계의 작동을 정지하지 않고 금형이 하강되기까지의 9초 동안 금형 안에 머리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불량품을 제거 중 9초 이내에 불량품을 제거하지 못하여 하강하는 금형에 머리 부위가 협착되어 사망함.



재해원인

- ① 비정상작업 시 주전원 미차단
- ② 수공구 등 보조기구 미사용
- ③ 위험점에 신체 일부 삽입하여 작업
- ④ 방호율 등 안전조치 미실시
- ⑤ 안전교육 미실시
- ⑥ 관리감독 소홀

법 위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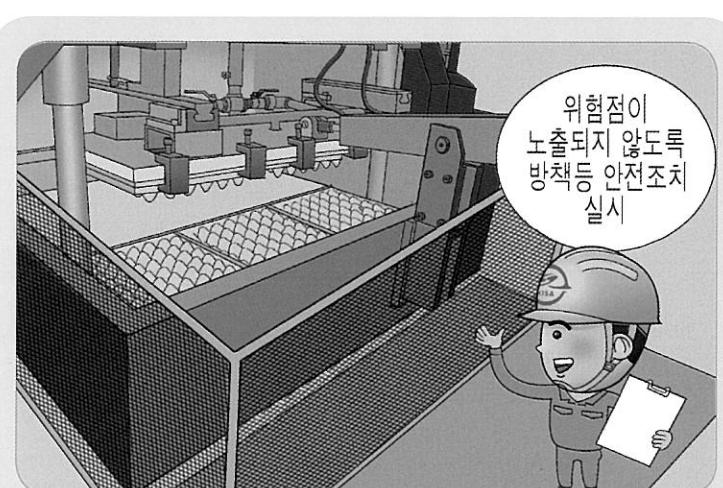
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. 5년 이하의 징역

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(사망 시 7년 이하의

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)

나.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.

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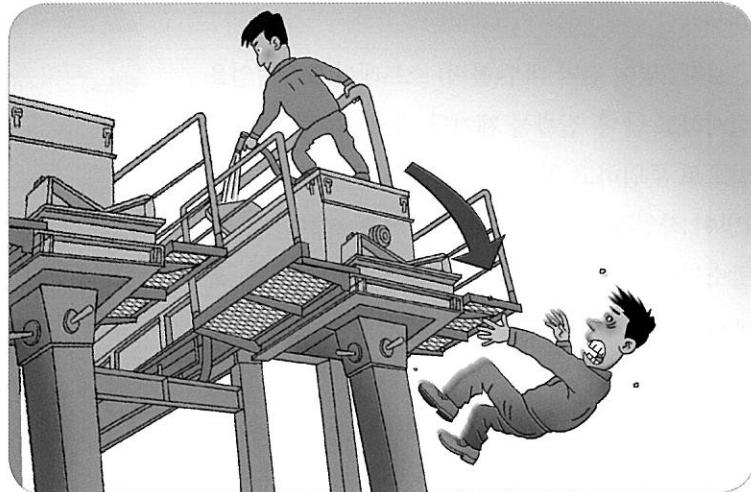
예방대책

- ① 비정상작업 시 전원차단 및 정지상태 확인 후 작업
- ② 위험점 작업 시 보조기구 사용
- ③ 위험점에 신체 삽입 금지
- ④ 위험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호율 등 안전조치 실시
- ⑤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실시
- ⑥ 관리감독 철저

고소작업장 청소작업 중 추락

재해개요

석탄가스를 제조하는 설비인 퍼그믹서의 계획 정지로 청소작업을 하기 위해 상부 덮개를 개방 후 협소한 공간(폭 7cm 정도의 탱크 프레임)에 서서 고압호스로 코팅제거(물청소) 작업 중 물기에 의해 원발이 미끄러지며 실족하여 약 4m 아래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함.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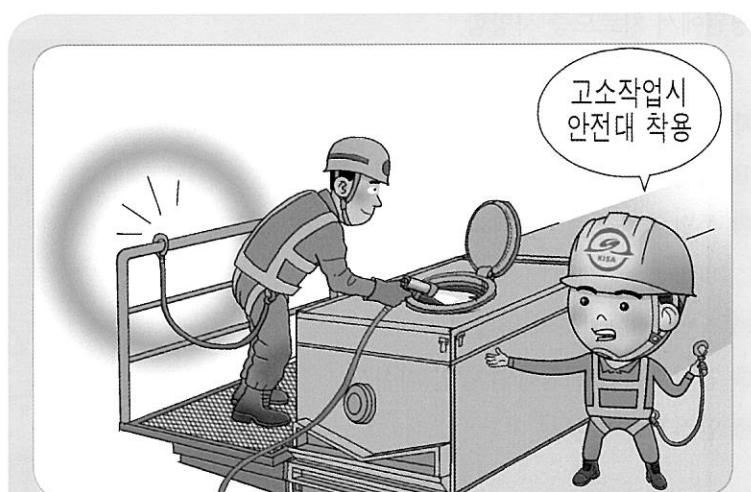


재해원인

- ①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조치 미실시
- ② 협소한 공간에서 안정되지 못한 자세로 작업
- ③ 적정 작업발판 미사용
- ④ 작업안전수칙 무시
- ⑤ 안전의식 결여
- ⑥ 관리감독 소홀

법 위반사항

- 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.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(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)
- 나.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.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

예방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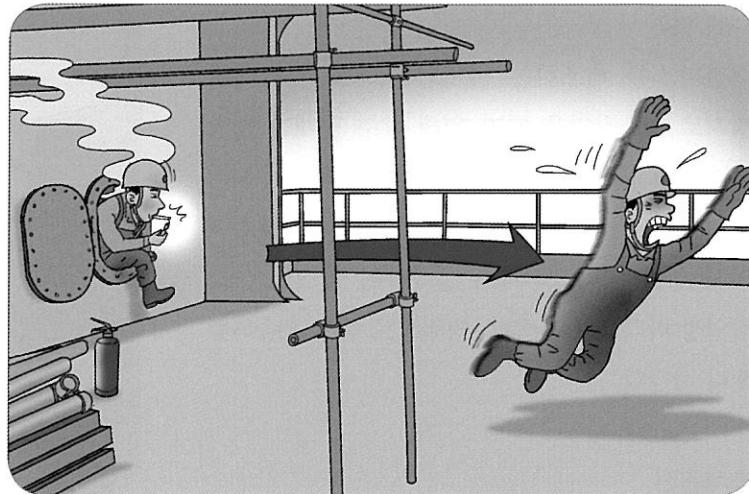
- ① 안전대 등 적정보호구 착용
- ②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확보
- ③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사용
- ④ 작업안전수칙 준수
- ⑤ 안전의식 고취토록 체험교육 등 실시
- ⑥ 관리감독 철저

업 종	석탄가스제조	
생 산 품	과립입상화	
가 해 물	작업장 바닥	
재해유형	추락	
피해 정도	인적	사망 1명
	물적	-

도장 작업장 내 흡연 시 폭발

재해개요

근로자 2명이 선박 내부(블럭)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실시하고 난 후 잔류물 제거를 위해 신너를 작업장 안으로 투입하고 잠시 휴식을 갖기로 하여 근로자 1명이 작업장에서 먼저 나와 휴식을 취하던 중 폭발소리와 함께 아직 작업장 내 있던 피재자가 폭 60cm 정도의 개구부를 통해 작업장 밖으로 튕겨나옴. 피재자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나오며 담뱃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. 피재자는 전신 2도 화상, 두개골 핵몰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도중 사망함.



재해원인

- ① 폭발위험장소 및 주변에서 흡연 실시
- ② 폭발위험작업 시 점화원(담배, 라이터) 통제 미실시
- ③ 작업 후 환기조치 미실시
- ④ 안전부서에 위험작업 승인 미실시
- ⑤ 안전교육 미실시



법 위반사항

- 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.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(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)
- 나.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.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예방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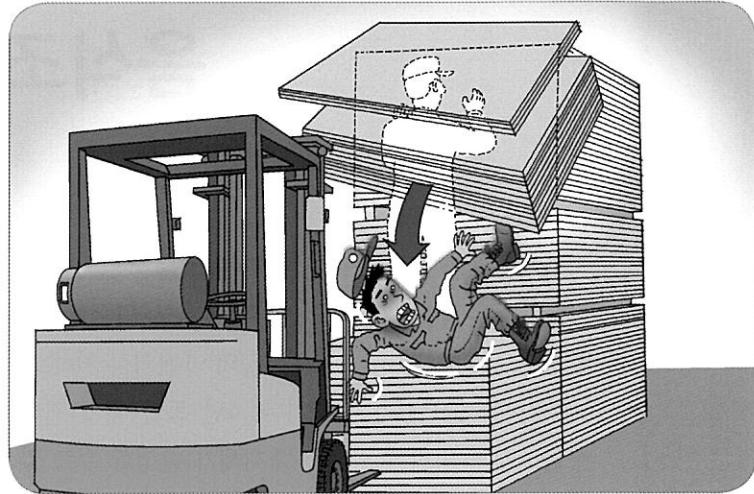
- ① 폭발위험장소 및 주변에서 흡연금지
- ② 도장작업 시 점화원 지참 금지
- ③ 작업 중 및 작업 후 환기 또는 불활성 기체로 치환
- ④ 위험작업 시 안전부서에 위험작업 승인 실시
- ⑤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실시

업 종	선박건조수리업	
생 산 품	블록 도장	
가 해 물	폭발화염	
재해유형	폭발	
피해 정도	인적	사망 1명
	물적	-

원자재 적재 중 낙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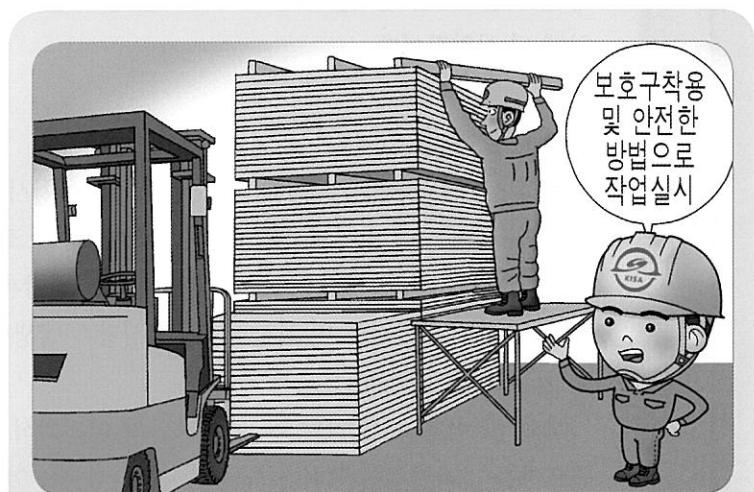
재해개요

입사한지 1개월 미만인 피재자는 창고에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주방가구용 원자재를 적재하는 작업을 실시함. 원자재 상단에 추가 적재를 위해 적재되어 있는 원자재 다발의 중간부분에 손을 넣고 더 높은 곳에 고임목을 설치하던 중 편하중 발생으로 적재되어 있던 원자재 40장(35kg/1장)이 낙하하여 피재자의 머리위로 떨어짐. 비재자는 창고 바닥과 원자재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함.



재해원인

- ① 안전하지 못한 작업방법으로 편하중 발생
- ② 안전모, 안전화 등 보호구 미착용
- ③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등 관리소홀
- ④ 무자격자에 의한 지게차 작업 실시
- ⑤ 중량물취급계획서 미작성
- ⑥ 피재자의 안전의식 결여



법 위반사항

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.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(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)

나.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.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업 종	목제품제조
생 산 품	주방가구
가 해 물	원자재
재해유형	낙하
피해 정도	인적 물적
	-

예방대책

- ① 안전한 방법의 작업실시
- ② 안전모,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
- ③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 관리 철저
- ④ 유자격자에 의한 3톤 이상 지게차 사용
- ⑤ 중량물취급계획서 작성 및 계획서에 의한 작업 실시
- ⑥ 안전의식 고취토록 체험교육 등 실시